##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203 제출연월일: 2024. 7. 24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,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·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출입·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,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지도·감독 등) ① ~ ⑦	제25조(지도・감독 등) ① ~ ⑦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
	따라 출입・검사 등을 하는 경
	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이를 행
	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, 조
	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
	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미리
	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
	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
	하지 아니하다.
<u>⑧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